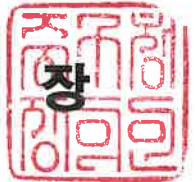


2024년 상반기 중구 다산동 모아센터 근무자 모집

2024년도 상반기 중구 다산동 모아센터(마을관리사무소) 근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. 12. 01.

중 구 청



1. 신청기간 : 2023.12.01.(금) ~ 12.11.(월), 09:00~18:00 (주말 제외)
2. 근무기간 : 2024.1.10. ~ 6.30. [5개월 20일간]
3. 모집인원 : 6명(주간 3명, 야간 3명)

☞ 상황관리 2명(주간 1명, 야간 1명)

· 센터운영 일반사무, 민원 접수·관리, 운영일지 작성, 시설운영, 현장지원 등

☞ 현장대응 4명(주간 2명, 야간 2명)

· 현장서비스 제공(청소환경, 생활안전, 주민편의 서비스 등)

※ 근무자 사정, 서비스제공 민원 상황 등에 따라 동주민센터가 탄력적 운영

4. 근무시간 : 주간근무자 09:00~15:30, 야간근무자 14:30~21:00
5. 근무지 : 중구 다산동 모아센터(마을관리사무소) 사무실 및 다산동 관내 현장
6. 근무역할 : 다산동 일대 안전순찰, 재난대응, 간단집수리, 물품배달 등
7. 신청장소 : 중구청 주택과 저층주거지정비팀(중구청 본관 6층)
8.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중구청 주택과 저층주거지정비팀
(중구청 본관 6층) 방문접수

※ 서울시 및 자치구, 투지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)

※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
< 구비서류 >

< 필수사항 >

- ① 근무자 지원 신청서
- ②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)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(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- ④ 구직등록확인(필)증(서울시일자리센터,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)
- ⑤ 주민등록필증
- 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(해당 시)
- ⑦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)

< 구비서류 >

< 선택사항 > 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- ▷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(가산점 대상)
- ▷ 여성가장(세대주) :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(가산점 대상)
- ▷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- ▷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-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(필요시에만 활용)

8. 신청자격

-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중구주민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9. 선발기준

- 사업별 자격(우대) 조건, 자격증, 사업별 고려요소 등
-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
 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 - ※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
 -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10. 임금 및 근로조건

- 임금 : 1일 60,000원, 부대경비 6,000원 별도 지급 ※ 6시간 근무 기준
- 근로조건 : 1일 6시간 이내, 주5일 근무원칙, 주·연차수당 지급
 - ※ 사업별 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(단, 주말,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)
- 4대보험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11. 합격자 발표 : 2023. 12. 27.(수) (변동 가능)

- ※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
- ※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휴대폰 및 유선전화) 기재

12. 근무자 모집 일정 (변동 가능)

모집공고	신청서접수	서류심사	면접심사	합격통보
- 구청 홈페이지 - 동주민센터 게시판	방문접수(주택과)	- 서류심사(1차) - 면접대상 개별통보	면접심사(2차)	- 합격자통보 - 근로계약체결
'23.12.01.(금) ~ '23.12.11.(월)	'23.12.01.(금) ~ '23.12.11.(월)	'23.12.12.(화) ~ '23.12.18.(월)	'23.12.19.(화)	'23.12.27.(수)

13. 문의사항

- 중구청 주택과(☎02-3396-5762)

붙임 1. 참여배제 대상 1부.

2. 근무자 지원 신청서 등 양식 각 1부. 끝.

【붙임 1】

참여배제 대상(접수일 기준)

▶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
※ 단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

▶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기준중위소득 80%
1인	1,782,756
2인	2,946,087
3인	3,771,726
4인	4,583,930
5인	5,356,588
6인	6,094,695

※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
※ 근로소득은 고용상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

▶ 1세대 2인 참여자

▶ 참여기간 : 특례사업에 해당하며 3년간 4회까지 가능

- 60세이상 고령자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
- 지역공동체 일자리, 어르신 일자리,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(공공)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(단,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)

《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》

■ '23년 기존 사업이 '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,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

■ 특례사업-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, 일반 참여 제한 기간 [2년간 2회(쪽방주민, 60세 이상 등 2년 3회)] 규정 적용

▶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▶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

▶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
▶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

▶ 정부 훈령·예규·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

▶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